

의안번호	제 18 호
의결연월일	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연월일	2004. 6. 18.

#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8
----------	----

제 출 일 자 : 2004. 6. 18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가. 「행정타운사업소」와 「혁신분권담당」의 한시 기구 및 정원(9명)이 승인됨에 따라, 우리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,
- 나. 증원(9명)되는 정원을 집행기관에 배치하고,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
(1) 승인정원 : 9명(5급1, 6급1, 7급1, 8급3, 9급2, 기능10급1)

- 지방공무원 총수 : 805명 → 814명 (9명 증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789명 → 798명 (9명 증)
 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6명

나. 한시정원 재규정(안 부칙 제479호)

(1)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: 3명 → 12명

- 존속기한
  - 3명(행정5급1, 전산7급1, 전산 8급1) : 2004. 6. 30 까지
  - 3명(행정6급1, 행정7급1, 행정 8급1) : 2007. 6. 30 까지
  - 6명(토목·건축5급1, 토목8급1, 환경8급1, 건축9급1, 농업9급1, 기능10급1) : 2006. 12. 31 까지

(2) 분야별 한시정원

-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(1명) : 주민자치과 행정5급1 (‘04.6.30 까지)
- 정보화사업 추진인력(2명) : 정보담당관실 전산7급1, 전산8급1 (‘04.6.30 까지)
- 혁신분권 전담인력 (3명) : 기획담당관실 행정6급1, 행정7급1, 행정8급1 (‘07.6.30 까지)
- 신청사·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 (6명 - ‘06. 12. 31까지)
  - 토목·건축5급1, 토목8급1, 환경8급1, 건축9급1, 농업9급1, 기능10급1

**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**

**5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  - 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805명” 을 “814명” 으로 하고, 같은조제1호중 “789명” 을 “798명” 으로 한다.

조례 제479호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, 6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,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그 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805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789명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6명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814명</u> ----, -----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798명 2.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
<p>조례 제479호(2001.9.15) 부칙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은 2004년 6월30일 <u>까지</u>로 하고, 그 중 1명은 2004년 7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</p>	<p>조례 제479호(2001.9.15) 부칙</p> <p>①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 <p>② (한시정원) ----- -----<u>까지</u>, 6명은 2006년 12월31일까지, 3명은 2007년 6월 30일 <u>까지</u>로 하고, 그 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</p>

## 관 계 범 령 발 취

### I. 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 (행정자치부 2004. 3.25)

- 기 구 : 1사업소
- 정 원 : 6명(5급1, 8급2, 9급2, 기능10급1)
- 시 행 : 조례규칙 공포일
- 존속기한 : 2006. 12. 31까지

### II.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지침 (행정자치부 2004.4.26)

- ◇ 자치단체 혁신 및 분권·균형발전 兩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업무증가를 고려하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감안, 최소 규모로 설치
- ◇ 지방분권특별법 유효기간('09. 1), 지방이양지원팀 존속기한('08. 6)등과 연계, 한시기구로 설치

#### ① 기구의 규모 · 존속기한

##### 가. 시·군·구의 기구·정원

- 기획부서 소속으로 「혁신분권담당」 설치
  - ▶ 기구표준안 : 혁신분권담당(6급)
  - ▶ 정원표준안 : 행정6급1명, 행정7급이하 2명 총 3명 내외
- 「혁신분권담당」에 책정하는 정원의 존속기한은 '07.6.30까지임

##### 나. 사천시 혁신분권담당기구 정원 승인 : 2004. 5.15

- 인 원 : 3명(행정급1, 행정7급1, 행정8급1)
- 존속기한 : 2007년 6월 30일까지